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81호 2015. 2. 2.(월)

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151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 ----- 2
- 사천시 조례 제1152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----- 9

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292호 사천시 사업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----- 2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2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151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2월 2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
“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0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3)

다만, 국가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「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보훈명예수당 : 월 3만원

2. 사망위로금 : 20만원(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)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

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,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)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각각 “별지 제1호서식” 과 “별지 제2호서식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한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4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)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.

제13조(지급대장 관리)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5)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

제15조(보훈명예수당의 환수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

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8)

[별지 제3호서식]

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

종류	지급일시	지급대상자		지급내역						
		성명	생년월일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은행명	계좌번호	대상자와관계
보훈명예수당										본인
사망위로금										배우자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9)

사천시 조례 제1152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2월 2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

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
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0)

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,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
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1)

제3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(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)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,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)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2)

제6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(5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실적보고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5. 1. 1부터 소급 적용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3)

금연지도원 신청서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성별	남, 여	
	주소(전화번호)	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서명)

사천시장 귀하

첨부물	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--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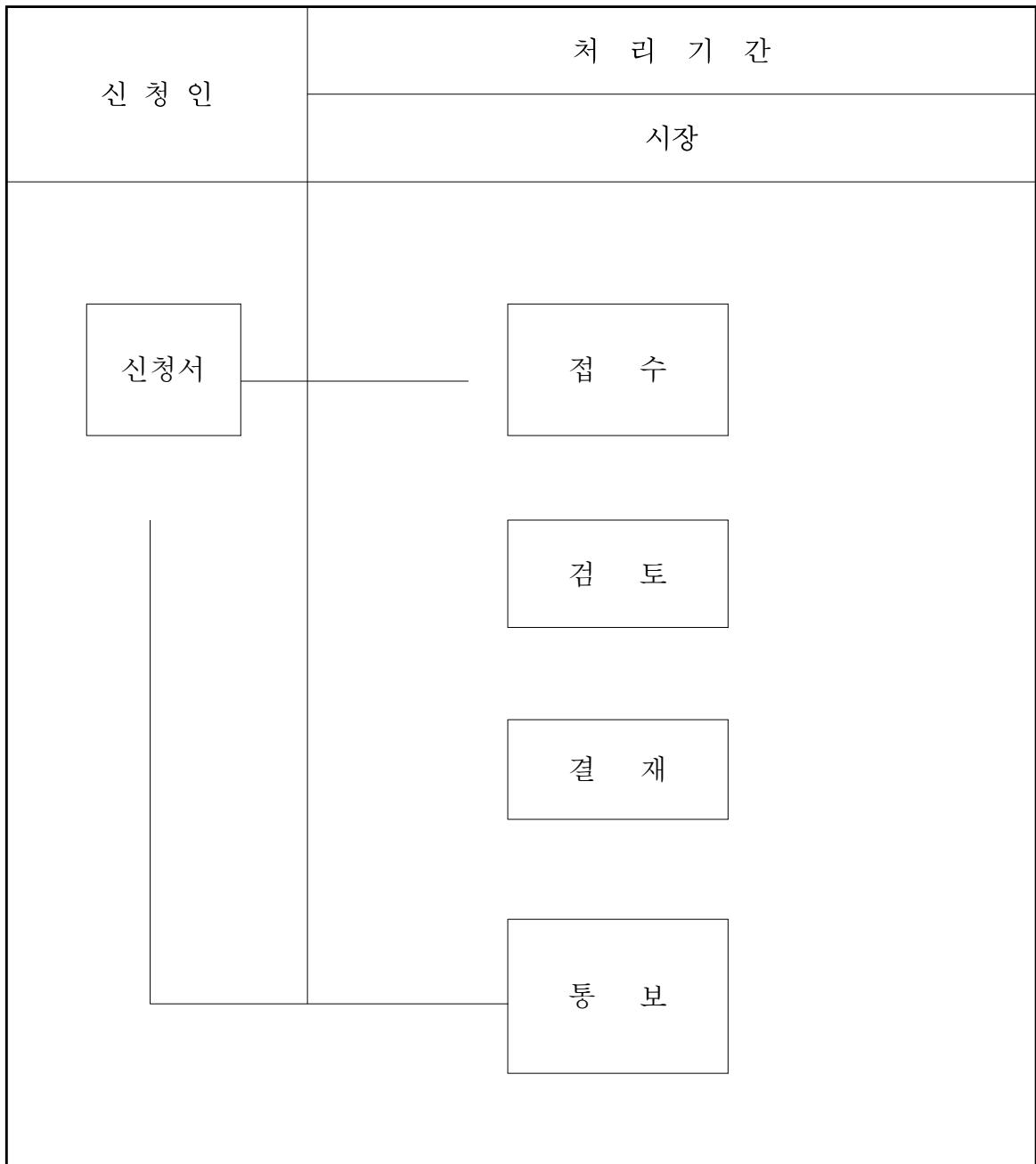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4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5)

금연지도원 추천서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	
	주소(전화번호)				
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주요경력 기재)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

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사천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7)

[별지 제4호서식]

제 20 - 호

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

소 속:

성 명: (한 자)

생 년 월 일:

위 축 기 간: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**금연지도원**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사천시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18)

[별지 제5호서식]

(앞 쪽)

제 호
금연지도원증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성 명 사천시장

60mm×90mm

(색상 : 연파랑)

(뒤 쪽)

소 속:
성 명:
생년월일(성별): ()
위 사람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
사천시장 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법에서 정하는 감사·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 ☎ 전화번호 : 000-000-0000

주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² or 플라스틱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20)

[별지 제7호서식]

단독 직무수행 승인서			
금연 지도원	①소속(단체명)		②성 명
	③ 생년월일		④전화번호
	⑤ 주 소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
⑦ 출입 장소			
⑧ 직무수행범위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「금연지도원 운영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사천시장 직인</p>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21)

훈 령

사천시 훈령 제292호

사천시 사업소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5년 2월 2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사업소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사천시 사업소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천시 산하 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 라 한다)를 “시 산하 사업소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사업소” 를 “시 산하 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“환경사업소, 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” 를, “평생학습센터, 환경사업소, 상하수도사업소” 로 한다.

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22)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하고, “결재시” 를 “결재시” 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81호(23)

[별표]

업 무 관 련 부 서(제3조 관련)

사업소명	부 서 명		비 고
	국	실 과	
평생학습센터	행 정 국		
환경사업소	행 정 국	환경위생과	
상하수도사업소	행 정 국	환경위생과	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업무
	산업건설국		